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6. 15.

행정재경위원회

의안 번호	172
----------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6. 1. 오온누리 의원 대표발의(9명 발의)

나. 상정의결

- 제312회 강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2023. 6. 15.)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대표발의자 오온누리 의원)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제정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정신건강 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및 치료 유도를 통해 사회적 비용 절감과 사회안전망 구축의 예방 목적에 있음. 이에 정신건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접근도를 높이기 위해 “마음건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사업취지에 맞도록 전부개정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내지 안 제3조)
- 검진 기관의 신청 및 지정, 지원 대상 및 내용(안 제4조 및 안 제5조)
- 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 환수 조치 등(안 제6조 및 안 제7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예산조치 : 논의 필요
- 조례안 예고 : 5일 이상 추진(2023.6.2.~6.12.)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조성수)

□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을 중심 키워드 제명으로 하여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광역 및 기초 지자체는 23개이며, 이 중 기초 지자체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14개 자치구가 있어 서울시 자치구들이 60%를 차지하고 있음.

특히, 광역지자체는 경기도만 시행하고 있음.

○ 다수의 지자체들이 해당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 이유를 추정해 보면, 관련 법률 제12조¹⁾를 근거로 알 수 있음.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르면 본 사업은 정부와 광역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시·군 및 자치구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총괄 및 지원하도록 하여 법률에서 직접 정부 및 광역지자체 중심 사무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이는 법률 내 다른 조문에서도 발견할 수 있을 것임.

○ 하지만, 인구밀도가 높은 서울시 자치구들의 입장에서 보면, 현대인의 초기 정신질환이 심각해지면 알콜이나 마약 등 유해물질 중독, 자살 등으로 심화될 수 있기에 이를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일 것이며, 이는 가장 주민과 근접해 있는 자치구가 적극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현지 대응력을 높게 할 것이라는 기대가능성을 갖게 한다고 할 것이기에 현실 및 현지 대응력이 높게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주요 정비사항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음.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등) ① 보

조문	조문 제목	주요 개정 내용	개정사항
제명	제명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으로 변경	<개정> “정신건강검진 지원” 삭제
1	목적	정신건강V위험요인, 치료 유도를 통해 국민의 마음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개정> 문구 정비
2	정의	정신건강검진 →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마음건강점진 등)	<개정> 1호와 2호 문구 정비, 3호 삭제
3	구청장의 책무	마음건강증진 여건조성 및 마음건강증진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	<개정> 제1항 문구 정비
4	검진기관의 신청 및 지정	현행 제5조를 제4조로 정비하고 현행 제5조의 제1항과 제2항 중 “마음건강검진 등의”와 “정신의료기관” 등 용어 정비 제3항 중 지역협의체 심의 지정 사항 정비	<삭제> 현행 제4조 삭제
5	지원 대상 및 내용	현행 제6조 지원대상 내용을 정비하여 개정안 제5조에 반영 제2항과 제3항 신설	<개정> 및 <삭제> 현행 제6조 및 제7조 삭제
6	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	문구 정비, 청구서 제출 등 의무화(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정비)	<개정> 현행 제8조를 개정안 제6조로 함
7	환수조치 등	현행 제17조 검진비 환수조치 등을 제7조로 이동하여 정비함	<개정> 현행 제17조를 안 제7조로 함
8	지역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협의체의 심의사항을 5개호로 열거하고,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삭제> 현행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9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마음건강검진 등 용어정비 등, 조문 조정	<개정> 현행 제16조를 안 제9조로 함
10	비밀누설의 금지	마음건강검진 등 용어정비 등, 조문 조정	<개정> 현행 제18조를 안 제10조로 함
11	시행규칙	조문 조정	<개정> 현행 제20조를 안 제11조로 함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및 제2조 경과조치	<개정> 제2조 경과조치 정비

□ 안 제2조(정의) 중 제1호는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을 우울증 등 정신건강 위험요인의 조기발견을 위해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시행되는 건강검진 및 상담이라고 하는데, 마음건강검진 등의 대상이 되는 증상을 다른 조문에서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지 않아 우울증을 중심으로만 하는 지원인지 불분명하기에 향후 세부적인 증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경우 **안 제5조(지원 대상 및 내용)**에 추가 반영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임.

□ **안 제8조는(지역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을 구체화하여 현행 지역협의체 자문기능을 **안 제2항**에 행정의 효율성 차원에서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로 통합·운영할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전부개정안	수정안
<p>제8조(지역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마음건강검진 등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2. 마음건강검진 등의 지원 절차 및 지원범위 3. 검진기관의 선정, 기간 연장 및 취소 4. 검진비 지원범위 5. 그 밖에 구청장이 마음건강검진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② 구청장은 필요시 제1항에 따른 지역협의체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설치된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p>	<p>제8조(마음건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마음건강검진 등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마음건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2. 마음건강검진 등의 지원 절차 및 지원범위 3. 검진기관의 선정, 기간 연장 및 취소 4. 검진비 지원범위 5. 그 밖에 구청장이 마음건강검진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② 구청장은 필요시 제1항에 따른 마음건강위원회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설치된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내 소위원회로 운영한다.</p>

○ 전부개정안으로 보면, 최소한 지역협의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통합·운영될 것 인지는 ‘삭제’된 상태로 통합·운영만한다는 것은 조례 구성상 매끄럽지 못하기에 가칭 ‘마음건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지역협의체명을 정비하고, 그런 후, 기초정신건강심의 위원회에 마음건강위원회를 소위원회로 운영한다는 규정을 반영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임.

부칙 개정안	수정안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정된 검진 기관은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정된 검진 기관은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보며, '지역협의체'는 '마음건강위원회'로 갈음한다.

- 비용 관련 사항을 검토해 보면, 본 사업은 현재 서울시비 100%로 7,000천원을 집행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량은 연간 110명 규모임. 따라서 향후 수요가 증가할 경우, 본 조례를 근거로 관련 예산을 증액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임. 그 현행 사업개요는 다음과 같음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사업 개요>

-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서울시민
- 지원내용 : 지정 검진의료기관에서 우울증 등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 (3회차까지/연간)

○ 검진절차

의료기관 방문 전 예약(신분증지참) → 전문의 상담 → 정보제공동의서 작성 및 설문 → 비용청구 (검진기관에서 보건소에 청구)

- 예 산 : 7,000천원(시비 100%)

○ 지원금액 내용

구 분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동일 적용
1인당 본인부담금 지원료 (마음건강검진료)	- 1회차 : 40,000원
	- 2회차 : 20,000원
	- 3회차 : 20,000원

※ 내원 당시 의료기관(타 의료기관 포함)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중인 자 또는 1년 이내 본 사업에 참여했던 대상자는 지원 불가

※ 약제비는 지원 대상이 아님 ⇨ 투약의 경우 본인부담금 발생

- 서울시는 타지자체보다 인구밀도가 높고, 사건사고와 전염병 등의 영향과

현대사회의 변화 다양성으로 심리적 스트레스와 우울증 그리고 개인 간의 채권 채무 등 갈등으로 인한 한국인의 병으로 알려진 (고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화병’ 등이 있어 마음건강 증진 및 상담이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 이를 초기나 조기에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으로 조치하여 치유하는 것은 가장 적극적인 치료방안이 될 것임.

□ 다만, 향후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서 정신의료기관에 의한 치유방안만을 고정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화병과 같은 마음건강 치유를 위한 한의학적 접근 및 한약 처방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긍정적일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

건복지부장은 제7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전국 단위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별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총괄·지원한다.

- ②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의 제7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정신건강증진사업등,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간 연계체계 구축 및 응급 정신의료 서비스 제공 등 광역 단위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역계획의 시행계획이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계획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총괄·지원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7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시행하는 경우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의 관련 활동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하여 자문·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두고, 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하여 자문·지원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둔다.
- ⑥ 제5항에 따른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및 지방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관련의안번호
제 172호

제안일자 : 2023.6.15.

제안자 : 행정재경위원장

1. 수정이유

일부 상위법과 위반 소지가 있는 조문의 내용을 보완하고 오기를 수정하고자 함

2. 주요 수정내용

- 안 제2항제1호에서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호의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제외하고 있는데 평등원칙 위반 소지를 보완(안 제6조)
- 개정과정에서 오기 부분을 수정(안제8조, 안제9조 , 안제10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 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
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8조의 제목 “(지역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을 “(마음건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
협의체”를 각각 “마음건강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중 “기초정신건강심의위
원회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를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내 소위원회로
운영한다”로 한다

안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안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사업 참여의원 지정서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사업
참여의원 지정서**

의료기관명		의료기관 개설번호	
소재지			
지정내용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사업 참여기관		
개설자(대표자)		면허번호	

본 의료기관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 사업
참여 검진 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강 남 구 청 장

직인

[별지 제3호서식]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사업 검진비 청구서 및 내역서

(앞면)

마음건강검진·상담지원사업 검진비 청구서

청 구 기 관(입력 또는 명판으로 대체 가능)			
검진기관명			
요양기관기호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지 급 계 좌			
은행명		예금주	
지급계좌번호			

(단위 : 원)

청 구 내 역				
구분	총 방문횟수별 대상자	1인당 검진료 지원액(A)	대상지수(B) (단위 : 명)	청구 금액 (A×B)
계(건강보험환자+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 + 의료수급권자 동일	소계			
	1회차 방문	40,000원		
	2회차 방문	20,000원		
	3회차 방문	20,000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우리 기관에서 ____년 ____월 ____일부터 ____년 ____월 ____일(말일)까지 실시한 검진비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____년 ____월 ____일

대표자: _____ (서명)

강 남 구 청 장 귀하

마음건강검진비 청구내역서

연 번	① 진 료 기 관	② 상 담 횟 수	③ 상 담 일 자	④ 대상자 인적사항					⑤ 보 험 유 형 (의료보험 의료급여)	⑥ 검 진 결 과	⑦ 추 정 진 단 명	⑧ 처 리 결 과 (1~6): 지 역 정 신 健 강 복 지 센 터 연 계 등	⑨ 비 고
				환자 성명	생 년 월 일	성 별	주소 지 (구명)	전 화 번 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처리결과 설명 : ①검진기관치료 ②타의료기관 소개 ③입원 ④거부 ⑤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⑥기타(비고란에 기타에 대한 설명 기재 바람)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전부 개정안	수 정 안
<p>제8조(<u>지역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u>) ① 구청장은 마음건강검진 등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u>지역협의체</u>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1. ~ 5. (생략)</p> <p>② 구청장은 필요시 제1항에 따른 <u>지역협의체</u>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설치된 <u>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u>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p>	<p>제8조(<u>마음건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u>) ① ----- ----- ----- <u>마음건강위원회</u>----- -----.</p> <p>1. ~ 5. (현행과 같음)</p> <p>② ----- <u>마음건강위원회</u>----- ----- ----- <u>기초</u> <u>정신건강심의위원회</u> 내 소위원회로 운영한다.</p>

수정안 대비표(별지 제2호)

전부개정안				수 정 안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사업 참여의원 지정서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사업 참여의원 지정서			
의료기 관명		의료기관 개설번호		의료기 관명		의료기관 개설번호	
소재지				소재지			
지정내 용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사업 참여기관			지정내 용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사업 참여기관		
개설자(대표자)		면허번호		개설자(대표자)		면허번호	
<p>본 의료기관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 사업 참여 검진 기관으로 지정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강 남 구 보 건 소 장</p>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black; width: 60px; margin: 0 auto; padding: 5px;">직인</div>				<p>본 의료기관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 사업 참여 검진 기관으로 지정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u>강 남 구 청 장</u></p>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black; width: 60px; margin: 0 auto; padding: 5px;">직인</div>			

수정안 대비표(별지 제3호)

전부개정안					수 정 안				
청 구 기 관(입력 또는 명판으로 대체 가능)					청 구 기 관(입력 또는 명판으로 대체 가능)				
검진기관명					검진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요양기관기호				
대표자					대표자				
소재지					소재지				
전화번호					전화번호				
지 급 계 좌					지 급 계 좌				
은행명				예 금 주					
지급계좌번호					지급계좌번호				
(단위 : 원)					(단위 : 원)				
청 구 내 역					청 구 내 역				
구분	총 방문횟수별 대상자	1인당 검진료 지원액(A)	대상자 수(B) (단위 : 명)	청구 금액 (A×B)	구분	총 방문횟수별 대상자	1인당 검진료 지원액(A)	대상자 수(B) (단위 : 명)	청구 금액 (A×B)
계(건강보험환자+의료급여 수급자)					계(건강보험환자+의료급여 수급자)				
건강보험 + 의료수급권자 동일	소계				건강보험 + 의료수급권자 동일	소계			
	1회차 방문	40,000원				1회차 방문	40,000원		
	2회차 방문	20,000원				2회차 방문	20,000원		
	3회차 방문	10,000원				3회차 방문	<u>20,000원</u>		
<p>「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우리 기관에서 _____년 _____월 _____일부터 _____년 _____월 _____일(말일)까지 실시한 검진비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p>					<p>「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우리 기관에서 _____년 _____월 _____일부터 _____년 _____월 _____일(말일)까지 실시한 검진비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p>				
<p>_____년 _____월 _____일</p> <p>대표자: _____ (서명)</p> <p style="text-align: center;">강 남 구 청 장 귀하</p>					<p>_____년 _____월 _____일</p> <p>대표자: _____ (서명)</p> <p style="text-align: center;">강 남 구 청 장 귀하</p>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오은누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2
----------	-----

발의연월일: 2023. 6. 1.

발의자:

오은누리·김민경·우종혁·김현
정·한윤수·김진경·안지연·이
동호·노애자 의원(이상9인)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제정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정신건강 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및 치료 유도를 통해 사회적 비용 절감과 사회안전망 구축의 예방 목적이 있음. 이에 정신건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접근도를 높이기 위해 “마음건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사업 취지에 맞도록 전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나. 검진 기관의 신청 및 지정, 지원 대상 및 내용 (안 제4조, 제5조)
- 다. 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 환수 조치 등(안 제6조, 제7조)
- 라. 지역협의체의 설치 및 자원봉사자 활용 등(안 제8조, 제9조)

마. 비밀누설의 금지, 시행규칙(안 제10조,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논의 필요

다. 입법예고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에 대한 정신건강 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및 치료 유도를 통해 구민의 마음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이하 “마음건강검진 등”이라 한다)이란 우울증 등 정신건강 위험요인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및 상담을 말한다.
2. “검진기관”이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관내 정신의료기관 중 마음건강검진 등의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마음건강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마음건강검진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검진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참여를 안내하고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검진기관의 신청 및 지정) ① 마음건강검진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관내 정신의료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검진기관 참여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참여를 신청한 정신의료기관에 대하여 선정에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검진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마음건강검진 등을 위한 의료기관으로 적합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검진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검진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⑤ 구청장은 지정된 검진기관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검진기관 참여 지정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⑥ 검진기관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정기간은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5조(지원 대상 및 내용) ① 마음건강검진 등의 지원 대상은 당사자가 마음건강검진에 동의한 사람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마음건강검진 등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진비 지원에 대한 세부 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 ① 마음건강검진 등을 실시한 검진기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검진비 청구서를 매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② 구청장은 검진기관이 검진비를 청구하는 경우 검진내역 등을 확인하여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검진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7조(환수조치 등) ① 구청장은 검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진비 지원을 중지하거나 검진기관으로부터 검진비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마음건강검진 등을 제공하고 검진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② 구청장은 검진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검진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마음건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마음건강검진 등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마음건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2. 마음건강검진 등의 지원 절차 및 지원범위
3. 검진기관의 선정, 기간 연장 및 취소
4. 검진비 지원범위
5. 그 밖에 구청장이 마음건강검진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필요시 제1항에 따른 **마음건강위원회**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설치된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내 소위원회로 운영한다.**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마음건강검진 등의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시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를 모집·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검진활동 보조 등을 수행하는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

서 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마음건강검진 등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정된 검진 기관은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p>제 호</p> <p>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사업 참여 신청서</p>			
의료기관명		의료기관 개설번호	
소재지	<p>전화 -</p> <p>팩스 -</p> <p>우편번호</p>		
신청내용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사업 참여		
개설자 (대표자)		개설일	년 월 일
의사면허번호		전문의 자격번호	
<p>본 의료기관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사업 참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인)</p>			

붙임 : 의료기관 신고증 사본 1부

[별지 제2호서식]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사업 참여의원 지정서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사업
참여의원 지정서

의료기관명		의료기관 개설번호	
소재지			
지정내용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사업 참여기관		
개설자(대표자)		면허번호	

본 의료기관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 사업
참여 검진 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강 남 구 청 장

직인

마음건강검진비 청구내역서

연 번	① 진 료 기 관	② 상 담 횟 수	③ 상 담 일 자	④ 대상자 인적사항					⑤ 보 험 유 형 (의료보험 의료급여)	⑥ 검 진 결 과	⑦ 추 정 진 단 명	⑧ 처 리 결 과 (1~6): 지 역 정 신 健 강 복 지 센 터 연 계 등	⑨ 비 고
				환자 성명	생 년 월 일	성 별	주소 지 (구명)	전 화 번 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처리결과 설명 : ①검진기관치료 ②타의료기관 소개 ③입원 ④거부 ⑤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⑥기타(비고란에 기타에 대한 설명 기재 바람)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오은누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2
----------	-----

발의연월일: 2023. 6. 1.

발의자:

오은누리·김민경·우종혁·김현
정·한윤수·김진경·안지연·이
동호·노애자 의원(이상9인)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제정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정신건강 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및 치료 유도를 통해 사회적 비용 절감과 사회안전망 구축의 예방 목적이 있음. 이에 정신건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접근도를 높이기 위해 “마음건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사업 취지에 맞도록 전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검진 기관의 신청 및 지정, 지원 대상 및 내용 (안 제4조, 제5조)
- 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 환수 조치 등(안 제6조, 제7조)
- 지역협의체의 설치 및 자원봉사자 활용 등(안 제8조, 제9조)
- 비밀누설의 금지, 시행규칙(안 제10조,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논의 필요

다. 입법예고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에 대한 정신건강 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및 치료 유도를 통해 구민의 마음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이하 “마음건강검진 등”이라 한다)이란 우울증 등 정신건강 위험요인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및 상담을 말한다.
2. “검진기관”이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관내 정신의료기관 중 마음건강검진 등의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마음건강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마음건강검진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검진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참여를 안내하고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검진기관의 신청 및 지정) ① 마음건강검진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관내 정신의료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검진기관 참여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참여를 신청한 정신의료기관에 대하여 선정에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검진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마음건강검진 등을 위한 의료기관으로 적합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검진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검진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⑤ 구청장은 지정된 검진기관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검진기관 참여 지정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⑥ 검진기관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정기간은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5조(지원 대상 및 내용) ① 마음건강검진 등의 지원 대상은 당사자가 마음건강검진에 동의한 사람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마음건강검진 등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진비 지원에 대한 세부 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 ① 마음건강검진 등을 실시한 검진기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검진비 청구서를 매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② 구청장은 검진기관이 검진비를 청구하는 경우 검진내역 등을 확인하여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검진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7조(환수조치 등) ① 구청장은 검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진비 지원을 중지하거나 검진기관으로부터 검진비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마음건강검진 등을 제공하고 검진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② 구청장은 검진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검진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지역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마음건강검진 등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2. 마음건강검진 등의 지원 절차 및 지원범위

3. 검진기관의 선정, 기간 연장 및 취소

4. 검진비 지원범위

5. 그 밖에 구청장이 마음건강검진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필요시 제1항에 따른 지역협의체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

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설치된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마음건강검진 등의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시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를 모집·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검진활동 보조 등을 수행하는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마음건강검진 등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정된 검진 기관은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p>제 호</p> <p>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사업 참여 신청서</p>			
의료기관명		의료기관 개설번호	
소재지	<p>전 화 -</p> <p>팩 스 -</p> <p>우편번호</p>		
신청내용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사업 참여		
개설자 (대표자)		개설일	년 월 일
의사면허번호		전문의 자격번호	
<p>본 의료기관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사업 참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인)</p>			

붙임 : 의료기관 신고증 사본 1부

[별지 제2호서식]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사업 참여의원 지정서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사업
참여의원 지정서**

의료기관명		의료기관 개설번호	
소재지			
지정내용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사업 참여기관		
개설자(대표자)		면허번호	

본 의료기관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 사업
참여 검진 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강 남 구 보 건 소 장

직인

[별지 제3호서식]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사업 검진비 청구서 및 내역서

(앞면)

마음건강검진·상담지원사업 검진비 청구서

청 구 기 관(입력 또는 명판으로 대체 가능)		
검진기관명		
요양기관기호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지 급 계 좌		
은행명		예금주
지급계좌번호		

(단위 : 원)

청 구 내 역				
구분	총 방문횟수별 대상자	1인당 검진료 지원액(A)	대상자수(B) (단위 : 명)	청구 금액 (A×B)
계(건강보험환자+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 + 의료수급권자 동일	소계			
	1회차 방문	40,000원		
	2회차 방문	20,000원		
	3회차 방문	10,000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우리 기관에서 _____년 _____월 _____일부터 _____년 _____월 _____일(말일)까지 실시한 검진비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_____년 _____월 _____일

대표자: _____ (서명)

강 남 구 청 장 귀하

마음건강검진비 청구내역서													
연 번	① 진 료 기 관	② 상 담 횟 수	③ 상 담 일 자	④ 대상자 인적사항					⑤ 보 험 유 형 (의료보험 의료급여)	⑥ 검 진 결 과	⑦ 추 정 진 단 명	⑧ 처 리 결 과 (1~6): 지 역 정 신 健 康 복 지 센 터 연 계 등	⑨ 비 고
				환자 성명	생 년 월 일	성 별	주소 지 (구명)	전 화 번 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처리결과 설명 : ①검진기관치료 ②타의료기관 소개 ③입원 ④거부 ⑤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⑥기타(비고란에 기타에 대한 설명 기재 바람)